

합정동 YG 사옥건립 중 마포구청과 YG사의 협약 해지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인 : 김연실(합정동 468) 외 100명

2. 소개의원 : 송병길 의원

3. 접수 및 회부일자

- 접수일자 : 2017. 9. 26
- 회부일자 : 2017. 11. 22

4. 청원 소개의원 요지

-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신축공사에 있어 인근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마포구청과 YG사의 업무협약을 해지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기를 청원함.

5. 청원요지

-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신축공사에 있어 인근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마포구청과 YG사의 업무협약을 해지
- 신사옥 1층 근린시설과 공중화장실 설치 반대
- 건물 주차장(지하, 타워)진출입로 위치 변경
- 공사에 의한 소음, 먼지, 진동 피해 대책마련

6. 그 간 추진사항

- 2016. 5. 4 : YG와 업무협약 체결
- 2016. 8. 26 : 건축허가 처리
- 2017. 1. 9 : 삼성강변아파트 주민 민원 제기
- 2017. 2. 16 : 주민 현장 면담 실시
- 2017. 3. 15 : 민원회의 개최(현장사무실) - 주민13명 참여
- 2017. 5. 10 : 주민간담회 실시(구의회 2층) - 3명 참여
- 2017. 6. 9 : 민원사항 의견 회신
- 2017. 7. 17 : YG 관계자 대책회의
- 2017. 9. 13 : 주민대표와 YG 관계자 협의
- 2017.11. 21 : 구의회 주민청원서 제출 관련 YG관계자와의 협의

7. 건축개요

- 대지위치 : 마포구 합정동 397-9외 6
- 건축주 : (주)YG엔터테인먼트
-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 공종 및 용도 : 신축/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 건축규모 : 지하5층/지상9층, 연면적 18,905.5㎡
- 사용승인(예정) : 2019. 01. 21.
- 규모(YG 라운지) : 120㎡(36평)
 - 휴게홀 81.8㎡(24평), 화장실 38.9㎡(11.7평)

8. 업무협약 개요

- 추진배경

- 구 YG사옥주변 국내외 관광객이 연예인을 보고자 개별 또는 단체가 인근사옥주변에서 쓰레기투기, 소음, 흡연, 방뇨 등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하던 중 YG신사옥 건립에 맞추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
- 협약일시 : 2016 .5. 4
- 주요내용 : YG에서 신사옥을 건축하면서 YG라운지를 추가로 건축한 후 마포구에 무상사용 임대
- 운용방법 : 시민 및 관광객 위한 범위 내 자율적 운영
 - * 공중화장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활용
- 사용기간 : 최초 사용 개시일 부터 5년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매 5년 마다 동일한 조건 자동 연장

9. 검토보고

- 본 청원은 김연실 외 100인이 합정동 YG신사옥 건립 중 마포구청과 YG사와 맺은 업무협약은 주민들의 의견 없이 체결한 협약이므로 해지하고 아울러 사옥건립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처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송병길 의원이 소개한 건임.
- YG라운지 건립 협약은 YG사가 사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구 유재산인 도로부지를 건축부지로 제공받길 원하였고, 마포구는 사옥신축으로 인해 발생할 민원(관광객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와 주민생활 불편사항 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익과 공익의 조화라고 볼 수 있음.

- 즉, YG 라운지 건립 협약은 마포구와 주식회사 YG엔터테인먼트가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공기여 목적으로 체결된 사항이며, 외국관광객, 국내외 팬, 지역주민이 길거리에서 배회하지 않고 좋아하는 연예인을 볼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 운영하는 시설이기에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YG라운지 건립으로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인한 교통 혼잡 우려 및 공중 화장실 설치에 따른 냄새를 우려하고 있으나, 요즘 공중화장실의 시설수준이 높아 화장실 냄새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카페 설치는 주변 동업종사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의 공정상 진출입로 변경은 불가하다는 건축 관계자의 의견이 있었으며, 지상으로는 진출입구만 설치되고 주차공간은 지하로 설치될 예정으로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주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 투명방음벽 및 조경 식재를 통한 민원해결을 모색하고 있음.

- 인근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하여, 건축관계자 대책회의를 통해 토목공사 시 저진동·저소음 장비사용 , 지상부 골조공사 시 수직보호망 및 분진망 설치 ,소음측정기 및 에어방음벽 설치, 도로 수시 물청소 실시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앞으로도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 발생 시 적극적인 행정으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검토의견으로는

YG라운지 관련 협약은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의 필요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원 해소를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음.

아무리 좋은 사업도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듯이 이번 협약으로 인해 일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임,

다만, 협약이 체결된 후 현재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 사업을 진행한 부분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마포구와 YG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할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KB손해보험 및 홀트 지하2층의 기부채납 받은 공연장 활용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인 : 박경식(합정동 393-8) 외 46명

2. 소개의원 : 송병길 의원

3. 접수 및 회부일자

○ 접수일자 : 2017. 11. 22

○ 회부일자 : 2017. 11. 22

4. 청원 소개의원 요지

○ 합정동 양화로 19길의 KB손해보험 지하2층 (구)LIG아트
홀 문화집회시설을 2011년에 기부채납 받아서 공연장으
로 활용하려던 당초 계획을 원안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
게 해달라고 청원함

5. 청원요지

○ 지하2층 공연장 시설을 문화집회시설로 존치하여 계속
공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함

○ 마포건강가정지원센터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폐지 바람

○ 방음, 방진으로 인해 공연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은
하자보수기간 내 보수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으로 구유

재산의 효율성 있는 관리가 필요함

6. 그 간 추진사항

- '17. 6. 9. ~ 6. 29.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공고 (유찰)
- '17. 7. 6. ~ 7. 26.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재공고 (유찰)
- '17. 8. 3. : 대기업 문화재단 대상 모집 (신청자 無)
- '17. 8. 8. : (구)LIG아트홀 사용 요청(가정복지과→문화진흥과)
- '17. 9. 1. : 재산관리관 변경(문화진흥과→가정복지과)
- '17. 10. 17. : 옴브즈만 (구)LIG아트홀 현장 점검
- '17. 10. 30. : 소음진동 전문가 현장 점검

7. 시설현황

- 위 치 : 마포구 양화로 19, 지하2층 (합정동)
 - 사용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 연습실 · 분장실 · 사무실 등)
 - 규 모 : 190석 (고정석 138석, 이동식 52석)
 - 전용면적 : 842.68㎡ (무대 173.39㎡, 객석 125.76㎡)
 - 대 지 : 공유자 지분 155.84㎡/4,088㎡
- ※ LIG문화재단 관리위탁 : '12.9.1. ~ '17.8. 31 (5년)

8. 검토보고

- 본 청원은 박경식 외 46명이 합정동 양화로 19길의 KB손해보험 지하2층 공연장 시설의 위탁기한 만료에 따라 문화집회시설로 존치하고 공연장으로 계속 사용을 원하는 내용으로 송병길 의원이 청원을 소개한 내용임

- 현 공연장은 LIG 문화재단이 지난 5년간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운영을 해왔으나 내부사정으로 계약연장을 포기하였고, 새로운 위탁자 선정을 위해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워 2차례 유찰되었고, 현재까지 참여의사를 밝히는 곳이 없는 상태임
- 현 공연장은 방음시설 등 개보수에 약 1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위탁 운영할 경우 매년 약 6~7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공연장 유지보다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음
- 검토의견으로는
 (구)LIG 아트홀 공연장 시설 개보수에 예산을 투입하여 공연장으로 활용하더라도 적자가 예상되므로 현재 수요가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활용하되 필요한 공간만 사용하고 시설내 공연장은 처음 계획 했던 문화집회시설로 존치하여 가족문화공연 및 필요시 지역문화예술인 등에 제공하여 다양한 예술인이 사용하도록 하고, 향후 공연장으로의 활용은 예산 및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이번 (구)LIG 아트홀 건을 계기로 향후 기부채납을 받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용도에 맞도록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구유재산 관리에 노력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령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시행 2016.3.24.] [서울특별시마포구규칙 제660호, 2016.3.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0)

제2조(청원소개서등) ①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청원서에 첨부되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 제5조,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74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0)

제4조(이의신청) ①청원이 「청원법」 제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7.12.20)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의 회부)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한다.
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③의장은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6조(청원의 심사) ①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인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기간내에 청원의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소개위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청원인등 진술) ①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마포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마포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3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4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이하 "의회회의규칙"이라 한

다)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07.12.20)

제16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12.20)

부칙 <제660호, 2016.3.24>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청원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